

6. 建築法施行令中改正令(案) 立法豫告

건설교통부공고 제1997-195호 1997. 6. 9

주요골자

- 가. 건축허가시 거쳐야 하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축소하여 건축허가 절차를 간소화함.
- 나. 대형건축물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전승인 권한을 시·도지사에게 이양하여 건축절차를 간소화 함.
- 다. 공장내 임시창고용 컨테이너를 가설건축물에서 제외하고 창고용 천막은 일반건축물이 아닌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분류하여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함.
- 라. 자연녹지중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는 곳의 용적률 기준을 상향조정(100%→150%)하여 창고등의 물류시설 설치를 용이하게 하고 생산녹지지역에서 창고시설의 설치를 허용함.
- 마. 주거지역에 건축가능한 근린생활시설의 비공해 소규모공장의 규모를 200㎡ 미만에서 500㎡미만으로 확대함.

개 정 이 유

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편의를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경제규제개혁과제를 수용하여 근린생활시설 공장의 규모를 상향조정하는 등 일부 건축기준을 조정하고, 물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창고시설의 입지규제를 완화하며 건축과 관련된 심의제도등의 개선을 통하여 건축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,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

주택회보